

2017 FTA 피해보전직불금 가이드

2017 FTA 피해보전직불금 가이드

신청기간: 2017.5.29~7.31

신청장소: 생산지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

문 의: FTA이행지원센터 콜센터(1899-4114)

또는 생산지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

| FTA피해보전직불금 |

01

올해 FTA피해보전직불금 지급 품목은 도라지입니다.



• 도라지



02

직불금 신청 대상자인지 다음 요건을 확인해 보고



- 농업인 등에 해당하고,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
–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자는 관할 농관원에 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
- 지급 품목을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
– 도라지 : 2015.12.20(한·중국 FTA 발효일)
-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급 품목을 직접 재배한 자(일부 위탁도 포함)
- 2016년에 도라지를 생산,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

03

아래 서류를 준비해서 생산지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에 신청하세요.



-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서(동사무소에 비치돼 있음)
- 증명서류(본인이 준비해야 함)
 - 지급 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 등을 증명하는 서류 (생산사실확인서, 2016년도 판매 기록 등)
 - 한·중국 FTA 발효일 이전부터 지급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(농협의 전산출력물·영수증, 택배 영수증 등)
 -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(임대차 계약서, 농장주 확인서, 농지사용료 입금증 등)

| FTA폐업지원 |

2017년 FTA폐업지원 품목은 없습니다.

| 2017 FTA피해보전직불금 Q&A |

1

Q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품목이 서로 다른 지역(시·군·구)에서 생산하는 경우 어디에 신청하나요?

A 생산 면적이 가장 큰 지역이 속한 시·도·구·군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2

Q 신청 내용과 지자체의 확인 결과가 다를 경우,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
A 확인 결과 통보를 받은 직후 10일 이내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생산지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.

3

Q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최소 면적 기준이 있나요?

A 품목별 상·하한 면적은 없습니다. 직불금 지원 한도는 개인 3,500만원, 법인 5,000만원 까지입니다.



문의

FTA 이행지원센터 콜센터(1899-4114)
또는 생산지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

| 직불금 지급절차 |



신청 완료
(~7월 31일)



자자체(시·군·구)의
서류·현지조사 및
대상자 확정(~9월)



지급액 포함한 직불금
지급 결정서 통보
(10월 중)



신청자 계좌로
입금(~12월)